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발 의 자 : 광향기 의원 외 23명
- 의안번호 : 제463호
- 발의일자 : 2023년 2월 3일
-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 2. 제 안 이 유

-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지속과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반영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소유자등', '맹견', '반려동물' 등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다.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 라.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3)
- 마. 동물보호센터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바. '동물보호관' 및 '명예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사. 동물의 분양·기증, 인도적 처리를 규정하는 용어를 수정함(안 제17조)
- 아. 출입 및 검사와 관련하여 영업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2조)

자. 위원회의 존속기한 삭제(부칙 제2조)

####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5.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피 재 황)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가구의 급증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동물보호·복지 제도의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함)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1년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음.

최근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반려가구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2년 4월 26일 상위법이 전부개정되었고 시행<sup>1)</sup>을 앞두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포함된 용어 추가 정의를 비롯해 등록대상동물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 맹견 출입금지 장소 및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영업자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상위법령에서 정비된 주요 정책과 제도<sup>2)</sup>에 관하여서는 향후 법 시행과 집행기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임.

1)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2) 상위법에서 정비된 주요 내용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 윤리위원회 기능을 보완한 것임.

- 세부적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소유자등’, ‘맹견’, ‘반려동물’ 등의 용어 정의를 반영하였음.

‘소유자등’은 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된 의무와 금지행위 등에서 소유자를 폭넓게 정의한 것으로 동물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것임.

‘맹견’은 기존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지칭했으나, 다른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추가하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안전까지 도모하는 목적으로 반영된 것임.

- 안 제7조는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목줄 착용을 통해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의2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규정하는 것으로 맹견의 범위를 기존에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것에서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발생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의3은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규정한 것으로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 반영하여 약자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를 기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서 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까지 확대한 것임.<sup>3)</sup>
- 안 제22조는 관계 시설의 출입 및 검사와 관련하여 법 제86조(출입·검사 등)제2항제7호<sup>4)</sup>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sup>5)</sup> 및 영업의 등록을 한 자<sup>6)</sup>를 명시한 것임.
-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2022년 4월 개정되어 2023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적기에 반영치 않으면 상위법과 불일치로 인한 조례의 법적 정합성 및 법체계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므로 향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변경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

3)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 3. (생략)

4.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 8. (생략)

4) 제86조(출입·검사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

5) 영업의 허가: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6) 영업의 등록: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